

한국간호과학회 윤리규정

2006. 10. 02 제정

2010. 06. 17 개정

2012. 08. 31 개정

2013. 07. 12 개정

2017. 02. 16 개정

2022. 07.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간호과학회(이하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회원으로서의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본 학회 회원에 적용된다. 적용 범위는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3조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본 학회 윤리헌장을 준수한다.
2. 회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학회의 임원은 학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학회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학회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학술 활동과 각종 사업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4조 (설치) 학회의 임원과 회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를 둔다. 단, 연구부정행위 관련 문제는 연구윤리 위원회에서 다룬다.

제5조 (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본 학회 기획법제위원회가 겸하며, 위원장은 기획법제위원장이 한다. 단, 윤리위반 행위가 있었던 자는 제외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권이 없다.

제7조 (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 심의
2. 윤리규정 개정(안) 발의
3. 기타 위원회에 부과된 업무

제8조 (윤리위반 행위 심의대상) 윤리위반 행위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2. 본 학회의 운영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
3. 기타 윤리적 문제로 학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제소된 사항이나 제보가 있을 때

제9조 (심의절차)

-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절차를 논의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제보자(또는 증인 및 참고인)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피조사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심의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후속조치)

- ① 심의 결과 윤리위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실행이사회에 보고하고 실행이사회에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② 학회장은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에게 통지한다. 단, 익명의 제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실행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